

## 제16 장 협력

### 제 1 절 농업, 수산업 및 임업

#### 제 16.1 조 목적

이 절은 양자협력을 촉진하고 양자적, 지역적 및 다자적 수준에서 기존의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상호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농업, 수산업 및 임업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활동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6.2 조 적용범위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 가. 혁신, 연구 및 개발
- 나. 일차상품 및 가공상품을 포함한 농업
- 다. 수산업 및 양식업
- 라. 임업
-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 바. 식량공급안보, 그리고
- 사.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분야

#### 제 16.3 조 협력활동

양 당사국은 농업, 수산업 및 임업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의한 협력활동을 증진한다. 협력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포함한 정보교환
- 나. 기술적 협력
- 다. 공동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 라. 전문가, 연구원, 학생 및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교류
- 마. 학회, 세미나 및 워크숍
- 바. 관련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견교환
- 사. 특히 농업, 수산업 및 임업 분야 교육기관의 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합동훈련 연습
- 아. 민간 부문 협력 증진
- 자. 상호 투자기회의 증진과 촉진
- 차. 농장 및 관련 생산시설 연구방문, 그리고
- 카.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 제 16.4 조 혁신, 연구 및 개발

1. 양 당사국은 농업, 수산업 및 임업의 혁신, 연구 및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경우 관련 분야의 협력활동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개발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 나. 물 관리 및 물 이용의 효율성
- 다.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 라. 기후관련 극단적 변화 완화
- 마. 생식기술, 영양 및 가축 식별과 추적시스템을 포함한 축산 실무
- 바.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식량의 생산성 향상
- 사. 농장 차단 방역을 포함한 차단 방역
- 아. 동물 및 식물 질병 연구
- 자. 생명공학
- 차. 식품안전, 그리고
- 카.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혁신, 연구 및 개발의 그 밖의 모든 분야

2. 양 당사국은 연구기관들 간 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 16.5 조 농업

한국과 호주 농업인들과 기업농들 간 협력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합의하는 농업사안에 대한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 가. 축산 및 축산 가공업, 작물경작, 원예, 관개농업 및 천연섬유 생산을 포함한 농업
- 나. 농업개혁 및 농업정책
- 다. 농업경제학
- 라. 세대교체 및 농가승계 계획
- 마. 농촌개발
- 바. 도시근교농업 및 도시농업
- 사. 환경 및 천연자원 경제와 관리
- 아. 식물, 동물 및 인체 영양의 작물학적 및 유전학적 향상을 포함한 영양
- 자. 지속가능한 보전농경기술, 그리고
- 차.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농업사안

## 제 16.6 조 수산업 및 양식업

1.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협력 분야는 다음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산업, 양식업 및 어류자원에 관한 정보교환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부수어획 및 어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의 최소화
- 나. 해양해충
- 다. 레저어획
- 라. 불법, 미보고 및 비규제 어획
- 마.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 바. 수산업 경제학과 자원 관리

2. 그 밖의 협력 분야는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수산업 협력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제 16.7 조 임업

임업 분야에서 현재 높은 수준의 양자협력 현황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추가 협력기회를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통나무 및 목재칩을 포함한 목재자원 무역의 증진
- 나. 산림자원의 개발, 이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 다. 기후변화가 산림자원에 미치는 영향
- 라. 산불관리 및 통제
- 마. 산림간벌
- 바. 산림해충 통제
- 사. 농가임업
- 아. 불법 벌채 및 관련 무역의 방지, 그리고
- 자.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분야

### 제 16.8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양 당사국은 인간, 동물이나 식물 건강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지역 동물 및 식물 질병 감시
- 나. 동물 질병, 식물 해충 및 질병의 예방 및 통제
- 다.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탐지 방법
- 라. 농약 및 수의용 약제 잔여물의 규제 및 통제와 그 밖의 식품안전 문제, 그리고
- 마. 그 밖의 모든 상호 관심이 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 및 안전 문제

## 제 16.9 조 식량공급 안보

1. 양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식량공급의 유지 및 식량안보 목적의 이행을 위한 국내 농업생산과 양자무역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관련 지역 및 국제포럼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세계적 식량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한다.
3. 장기적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 쌍방무역 및 투자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농업 및 식량에서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주요 식량 및 사료용 곡물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공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협력 체제(농업 협력 위원회를 포함할 수 있다)를 통하여, 그 사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된 요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사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그 영토에서 설립된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금지나 제한을 도입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어떠한 수출금지나 제한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기 전에, 농업 협력 위원회에서 그런 금지나 제한조치의 영향과 관련 구제조치들을 적절히 고려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협의를 실시한다. 수출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개방시장과 연속되는 공급망의 조기 회복을 위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6. 각 당사국은 농산물 수출에 있어 높은 수준의 안전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고품질 식량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인정한다.

## 제 16.10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절의 운영과 관련된 접촉선을 지정한다. 이 절의 목적상,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호주의 경우, 농림부 또는 그 승계 기관
2. 접촉선은,
  - 가. 이 절과 관련하여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 나. 제16.11조에 언급된 농업 협력 위원회를 조정한다. 그리고

- 다.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양 당사국 간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 제 16.11 조 농업 협력 위원회

1.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립된 농업 협력 위원회는 농업, 수산업 및 임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이 절의 이행의 검토, 점검 및 평가
  - 나. 양 당사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이 절 하에서의 협력활동에 관한 권고
  - 다. 이 절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 고려 및, 적절한 경우, 해결,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능
3.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각 회합의 일자, 장소 및 의제는 접촉선 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 제 16.12 조 재원

1. 이 절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절에 구상되어 있는 협력활동은 적절한 재원이 지원될 때에만 효과적으로 이행가능함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자국의 역량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경로를 통하여 그러한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원을 제공한다.
2. 농업 협력 위원회가 자신의 연례 작업 계획의 일부로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특정 협력활동을 위한 재원제공에 관한 추가적 세부사항은 농업 협력 위원회가 정한다.
3. 안정적이고 이용가능한 재원으로의 접근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농업 협력 위원회는 자신의 협력활동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의 정기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 제 2 절 에너지 및 광물자원

### 제16.13 조 목적

이 절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6.14 조 협력활동

1. 양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의한 협력활동을 증진한다.
2. 협력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에너지 효율 조치 및 기후변화 관련 조치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및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의 공동 활동
  - 나. 에너지 효율 조치 및 기후변화 관련 조치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교환
  - 다. 에너지 효율 조치 및 기후변화 관련 조치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에 관한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교류 증진, 그리고
  - 라. 양 당사국 간 공공, 학계 및 민간 부문의 관련 전문가, 기술자 및 지도자에 의한 것과 같은 방문 및 교류

### 제 16.15 조 무역 및 투자의 증진 및 원활화

1.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에서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 가. 신생 기술과 재생 에너지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에 관한 투자의 장려
  - 나. 각각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투자 정보의 제공 및 교환의 촉진

- 다. 각 당사국의 투자증진 활동 장려 및 지원, 그리고
  - 라. 투자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우호적이고 투명한 여건의 유지 및 육성
3. 제11.2조(다른 장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장과 제11장(투자) 간의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제11장이 우선한다.

### 제 16.16 조 정보의 교환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정보교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분포, 매장량 및 개발계획에 관한 지질학적 자료 또는 정보
- 나.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과 관련된 투자에 관한 정보
- 다. 입찰, 기반시설 개발 및 채굴사업과 같은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
- 라. 투자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과 관련된 각자의 법, 규정 및 정책에 관한 정보
- 마. 광해 방지 기술, 환경관리 및 그 밖의 자원관리 규정이나 관행에 관한 정보
- 바. 석탄, 석유, 가스, 전기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재 및 미래동향에 관한 정보
- 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과 관련된 현재 및 계획된 기반시설 개발에 관한 정보, 그리고
-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관련된 정보

### 제 16.17 조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안보

1.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안보의 중요성과 장기적 안보를 달성하는데 있어 무역, 투자 및 협력이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2. 주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공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협력체제(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를 포함할 수 있다)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사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당사국에게 이용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제 16.18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절의 운영과 관련된 접촉선을 지정한다. 이 절의 목적상,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호주의 경우, 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2. 접촉선은,
  - 가. 이 절과 관련하여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 나. 제16.19조에 언급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를 조정한다. 그리고
  - 다.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제 16.19 조**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

1.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되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이 절의 이행의 검토, 점검 및 평가
  - 나. 각 당사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이 절 하에서의 협력활동에 관한 권고
  - 다. 이 절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기능
3. 양 당사국은 상호동의에 의하여, 논의될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의 대표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각 회합의 일자, 장소 및 의제는 접촉선 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 제 16.20 조 재원

1. 이 절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절에 구상되어 있는 협력활동은 적절한 재원이 지원될 때에만 효과적으로 이행가능함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자국의 역량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경로를 통하여 그러한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원을 제공한다.
2.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위원회가 자신의 연례 작업 계획의 일부로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특정 협력활동을 위한 재원제공에 관한 추가적 세부사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위원회가 정한다.
3. 안정적이고 이용가능한 재원으로의 접근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위원회는 자신의 협력활동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의 정기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